2014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(2차)

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,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
> 2014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◈ 사업목적

- 기후변화, 고유가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
- ◈ 세부사업별 지원분야

세부사업명		지원분야
에너지 공급기술	신재생에너지융합 핵심기술	■ 태양광
에너지	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	■ 스마트그리드
수요관리기술	에너지자원융합 핵심기술	■ 에너지효율향상, 에너지저장

1. 지원내용

□ 지원예산 : 총 85 억원 내외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구분	과제 유형	프로 그램	기획 유형	개발기간	개 요
중 장 기	전략 핵심	시장 선도	융합비즈	3년 내외	 목표 :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통한 국내외 시장진입 및 시장창출 연구단계 : 응용 또는 개발연구 주관기관 : 산·학·연 지원규모 :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

* 융합비즈형 기획유형은 동일 주제에 대한 복수의 기획사업자간 경쟁기획을 통해 선정된 우수 기획보고서 및 RFP를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

□ 공모방식

○ (지정공모)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

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

-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·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이고,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.0% 이상임
-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·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

참여 기업수	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	정부출연금 지원 비율	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
1개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	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.0% 이상
	대기업	연도별 사업비의 50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.0% 이상
2개 이상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/3 이상	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.0% 이상
	그 밖의 경우	연도별 사업비의 50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.0% 이상

- * '참여기업'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,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
- * '중소기업'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- * '중견기업'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
- * '대기업'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임
 -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
 -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중 중소·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 연금 배분 비율을 30% 이상으로 권고함
 - 대기업은 중소·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(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)
 -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%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
 -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

□ 기술료 징수

○ 기술료 징수대상

-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"불성실수행"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
- *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

○ 기술료 징수방식

-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: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, "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해야 함
-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: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, 기 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

○ 영리기관의 기술료

- (정액기술료)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)에 납부하여야 함

실시기업 유형	정액기술료 [*]
대기업	정부출연금의 40%
중견기업	정부출연금의 30%
중소기업	정부출연금의 10%

- *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
- (경상기술료)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)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. 단,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

실시기업 유형	착수기본료*	경상기술료
대기업	정부출연금의 10%	매출액의 5.00%
중견기업	정부출연금의 10%	매출액의 3.75%
중소기업	정부출연금의 5%	매출액의 1.25%

* 착수기본료 :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- (기술료 감경)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"혁신성과"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%를 감경 가능하고,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, 연수, 교육 등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

□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

-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(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)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,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하여야 함
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13년 12월 3일 이후)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
-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
-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(현금+현물)의 30%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이 가능함
 -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
-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 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

□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

- 중소·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 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,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. 단,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
-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, 단일기 업이 여러 과제(5개이하)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%로 한정함

□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,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 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.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 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,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. 다만,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,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(추진방법, 편성도,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, 사업비 구성 등)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
-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,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
□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

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

○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,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%이상 2%이하로 책정하여야 함

2. 지워분야

□ 중장기(전략핵심) - 시장선도, 지정공모

	세부 사업	분야	과 제 명	프로 그램	기획 유형	기술료	중소 참여 주관		비고								
에너지 공급	신재생 에너지 융합핵심	태양광	박막 실리콘 태양전지 기반의 차량용 투과형 솔라 선루프 시스템 개발	시장 선도	융합 비즈	징수	주관	I	-								
	전력산업 융합핵심	스마트 그리드	에너지융합스테이션 기반 VPP 및 VESS를 활용한 V4G 기술개발	시장 선도	융합 비즈	징수	ı	참여	-								
에너지 수요		에너지지원	에너지지원							효율	제조산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확장형 FEMS 개발	시장 선도	융합 비즈	징수	주관	_	_
관리				향상	기축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효율화 시스템 및 운용최적화 기술	시장 선도	융합 비즈	징수	주관	-	-						
		에너지 저장	해외수출형 중소형 분산 에너지저장 장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	시장 선도	융합 비즈	징수	주관	_	_								

- * 중소·중견기업 주관: "중소·중견기업 주관"으로 표기된 과제는 중소·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 으로 신청하여야 함(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)
- * 중소·중견기업 참여: "중소·중견기업 참여"로 표기된 과제는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하거나, 컨소시엄내 중소·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- * 지원대상 과제별 "RFP"는 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

□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

-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"정량적 기술목표 항목"에는 기술제안서(RFP)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
- "정량적 성과 목표항목"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
-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·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 되며,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해야 함
- *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및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 참조
- (사업추진체계) 총 1개 과제로 구성하고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

□ 중장기 과제 중복성 제기

- 중장기 과제 중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 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 - * 정부에 의한 기 지원·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
 -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의 "정보자료실→사업정보자료→지원과제정보"
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"사업과제→정보마당→세부과제/유사과제"
- 제기기간 : 2014. 6. 3(화) ~ 7. 17(목) 18:00 까지
- 제 기 처 : (135-502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	사업명	평가원 담당부서	연락처 (☎ 02-3469-0000)
에너지 공급기술	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		
에너지	전력산업융합핵심(스마트그리드)	력산업융합핵심(스마트그리드) 기획총괄실	
수요관리기술	에너지자원융합핵심		

○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
□ 기타사항

-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,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 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

3. 신청자격

- □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
 -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('14.7.17)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(사업자등록증 기준)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 -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

4. 신청요령

□ 신청방법

○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**반드시 전산접수증**을 출력하여 사업계 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
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

- 양식교부 : 2014. 6. 3(화) ~ 7. 17(목)
-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열린소식(사업공고) 및 사업관리시스템 (http://genie.ketep.re.kr)

□ 인터넷 전산등록

- 전산 등록처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
- 전산 등록기간 : 2014. 6. 10(화) ~ 7. 16(수) 18:00 까지
 - *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
 - *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
 - * 전산 등록 마감일('14.7.16)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

□ 신청서 제출

- 제출마감 : '14. 7. 17(목) 18:00 까지
 - * 서류접수(우편)는 7월 1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(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)
 - *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
- 제 출 처 : 우)135-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-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
 - *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. 공고번호. 신청과제명(세부과제 포함) 등을 기재하여야 함

□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5. 관련 규정

□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,「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」

6.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
□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

- 사업계획서 접수(~'14.7월17일) → 평가위원회 평가('14.8월중) → 평가결과 통보 및
 이의신청, 현장점검 실시('14.8월말) → 사업비 조정('14.8월말) → 신규사업자 확정 ('14.9월초) → 협약체결('14.9월중~)
 - * 중장기 과제의 경우 기술성/사업성을 분리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각 평가위원회 별로 별도 발표자료 사용
 - *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"재평가"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
 - *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
- 평가위원회 평가항목은 "기술성 및 개발능력", "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" 등임. 단,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란 및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 참조
-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

□ 평가 시 우대사항

○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. **단, 가점의 총점은**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추가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

번호	항 목	가점 (감점)
1	ㅇ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(접수 마감일 기준,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·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)	2
2	ㅇ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	1
3	ㅇ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"혁신성과"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	1
4	○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-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(3점) -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% 이상인 경우(5점) *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 과할 수 없음 ** 서류접수시 재직증명서 제출(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가능)	5 (최대)
5	○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'가족친화인증 기업'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* 대상사업: 에너지자원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만 적용되며,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	2
6	ㅇ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, 신뢰성(R) 인증, 우수디자인상품(GD)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	
7	○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기업(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, 그가 소속된 기업),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,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'성과공유제 도입기업확인'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	3
8	ㅇ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	2
9	o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(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)	2
10	○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'를 신규채용"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*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취업·창업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,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** "신규채용" 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'13.12.3 이후)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채용한 경우	3
11	ㅇ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*을 신규채용**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	3

번호	항 목	가점 (감점)
	*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(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)을 말함 ** "신규채용" 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'13.12.3 이후)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채용한 경우	
12	○산업기술혁신 R&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「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」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우대(3점). 단,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,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- (중소기업,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) 연구인력을 신규채용*하고 "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" 충족시 - (대기업)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*하고 "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" 충족시 * "신규채용" 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13.12.3 이후)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채용한 경우	3
13	○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-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,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 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* 장애인증,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	1
14	○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&D 가능 시 * 구매조건부 R&D를 위한 구매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	2
15	○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(기업)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 의 기관(기업)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(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)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 청한 경우	2
16	ㅇ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"이달의 신기술상(신기술부문)"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 우	3
17	ㅇ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)의 경우	-3
추가 가점	 중장기 과제 중 융합비즈형 기획유형 공고과제에 한해, 우수기획으로 선정된 기획주관기관 및 수행책임자가 포함되어 과제를 주관하 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	3

- *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서류제출 시 미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불인정함)
-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

(단위: %)

세부분야 가이드라인	에너지자원융합	신재생에너지	전력산업융합
	핵심기술	융합핵심기술	핵심기술
인건비 비중	35~45	25~35	40~50

*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(현금, 현물 포함)의 비중을 의미하며,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로 상기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경우에 대해 가점을 인정함

□ 사전지원제외대상

-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출양
 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
-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('14.7.17)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 기업인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 나 거의 유사한 경우
- 단,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"이나 "불성실수행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
 -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"사업과제→정보마당→세부과제/유사과제"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('14.7.17)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 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접수마감일('14.7.17)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
-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함

구분	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검토기준	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예외로 한다.)

	4. 파산・회생절차・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
	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
	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	5.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
	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
	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
	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
	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업력이 2년 미만
	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	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	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	○ 주관기관,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
	- 탈락처리(사전지원제외)
	○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
조치	-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교체
	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
	○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
	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.
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('14.9월)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(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%를 초과한 경우)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
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
-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 사업 신청 마감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
-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 - * 기관정보현황(기업의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), 총괄책임자 경력, 우대사항 관련 등

□ 보안등급 분류

-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
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 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
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7. 문의처

□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 열린소식(사업공고) 참조

□ 고객만족 콜센터

고객센터 서비스	연락처
중소·중견기업 전용서비스	1899-0786
에너지 R&D 전화상담 서비스	1899-0784

□ 과제접수/신규 평가 관련 문의

구 분		과제접수 및 신규평가 관련	
	사 업 명	평가원 담당부서	연락처 (☎ 02-3469-0000)
에너지 공급기술	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	신재생에너지팀	8437~8
에너지 수요관리 기술	전력산업융합핵심(스마트그리드)	전력원자력팀	8441, 8444, 8446
	에너지자원융합핵심	효율자원팀	8421, 8425~6

□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 관련 문의

구 분	부서	연락처 (☎ 02-3469-0000)
전산접수	GENIE 운영팀	8813, 8814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 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·지원하고 있사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